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선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관내이용자 아닌 자가 관내 체육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사용료를 가산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시민의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관내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 관내이용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사용료 가산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
- 별표 3 부대시설 사용료 비고란 상충 문구를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별표 3)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년 3월 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입법예고>공지)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31, · 팩 스 : 031)3036-8953
 - 전자메일 : blue6017@korea.kr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내이용자”란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 및 직장(학교)에 재직(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단, 단체의 경우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전단의 관내이용자인 경우를 말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내이용자가 아닌 경우 전용 및 개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별표 중 3. 부대시설 사용료 비고 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제9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해서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u><단서 신설></u></p> <p>②·③ (생략)</p> <p>[별표]</p> <p>3. 부대시설 사용료</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사용기준</th> <th style="width: 15%;">사 용 료</th> <th style="width: 5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라 이 트 시 설 (조 명 탑)</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종합운동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인조잔디구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 광 판</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영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무 대 시 설 무 대 조 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대장치 작업 및 시설준비는 50%</td> </tr> </tbody> </table>	구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라 이 트 시 설 (조 명 탑)	1회	50,000	종합운동장	1회	30,000	인조잔디구장	전 광 판	1회	100,000	수영장	무 대 시 설 무 대 조 명	1회	40,000	무대장치 작업 및 시설준비는 50%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관내이용자”란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 및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단, 단체의 경우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전단의 관내이용자인 경우를 말한다.</u></p> <p>제9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 ----- ----- ----. <u>다만, 관내이용자가 아닌 경우 전용 및 개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별표]</p> <p>3. 부대시설 사용료</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사용기준</th> <th style="width: 15%;">사 용 료</th> <th style="width: 5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라 이 트 시 설 (조 명 탑)</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종합운동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인조잔디구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 광 판</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영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무 대 시 설 무 대 조 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대장치 작업 및 시설준비는 50%</td> </tr> </tbody> </table>	구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라 이 트 시 설 (조 명 탑)	1회	50,000	종합운동장	1회	30,000	인조잔디구장	전 광 판	1회	100,000	수영장	무 대 시 설 무 대 조 명	1회	40,000	무대장치 작업 및 시설준비는 50%
구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라 이 트 시 설 (조 명 탑)	1회	50,000	종합운동장																																				
	1회	30,000	인조잔디구장																																				
전 광 판	1회	100,000	수영장																																				
무 대 시 설 무 대 조 명	1회	40,000	무대장치 작업 및 시설준비는 50%																																				
구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라 이 트 시 설 (조 명 탑)	1회	50,000	종합운동장																																				
	1회	30,000	인조잔디구장																																				
전 광 판	1회	100,000	수영장																																				
무 대 시 설 무 대 조 명	1회	40,000	무대장치 작업 및 시설준비는 50%																																				

	기본 무대	1회	30,000	고정식·이동식 단상
	전동 무대	1회	50,000	무대아래 전동식 보조무대(대체육관)
음향설	앰프 사용	1회	30,000	유선마이크(2개기본)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선마이크 (핀마이크포함, 1개)
전기·조명		1회	30,000	대체육관
			20,000	소체육관
냉·난방		1시간	40,000	대체육관,수영장
			20,000	소체육관,다목적실
			10,000	문화강의실
기타의설	식당	1일	30,000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스크어보드 (소형LED)	1회	20,000	이동식 또는 간이 점수표시기
	빔프로젝트	1회	20,000	영화상영시 사용료면제
	아취설치	1일	20,000	
	현수막	1건	10,000	
	접의자	1개	200	이동식접의자 등
1. 1회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단, 1일은 전용사용허가 시간 이내임) 2. 운영·설치 인원은 사용자 측에서 준비하며, 사용종료 후 원상태로 회복한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부대시설 사용은 상기내용을 준용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기본 무대	1회	30,000	고정식·이동식 단상
	전동 무대	1회	50,000	무대아래 전동식 보조무대(대체육관)
음향설	앰프 사용	1회	30,000	유선마이크(2개기본)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선마이크 (핀마이크포함, 1개)
전기·조명		1회	30,000	대체육관
			20,000	소체육관
냉·난방		1시간	40,000	대체육관,수영장
			20,000	소체육관,다목적실
			10,000	문화강의실
기타의설	식당	1일	30,000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스크어보드 (소형LED)	1회	20,000	이동식 또는 간이 점수표시기
	빔프로젝트	1회	20,000	영화상영시 사용료면제
	아취설치	1일	20,000	
	현수막	1건	10,000	
	접의자	1개	200	이동식접의자 등
1. 1회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단, 1일은 전용사용허가 시간 이내임) 2. 운영·설치 인원은 사용자 측에서 준비하며, 사용종료 후 원상태로 회복한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부대시설 사용은 상기내용을 준용한다. 4. 삭제				